



제 안 설 명

-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 령 군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조 백 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가야읍 향교길 25 대가야행복드림 1층에 위치한 20명 정원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로, 2022년 3월 30일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연간 총 150백만원 정도이며, 2024년 기준 인건비 132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22. 6. 1~2024. 12. 31.까지 2년7개월 간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 12. 31.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기존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운영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시설은 다산면 다산로 681의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위치한 198㎡(60평) 면적의 장난감도서관이며,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 영유아 장난감 구매·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 보고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위·수탁 기간 내에 개관하게 되면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2027.12.31.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연간 120백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를 10. 8(화) 개최하여,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아이누리장난감 평가자료와 위탁 운영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의결되어,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가족행복과장 조 백 섭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24. . . (제 회) | |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
|-------|------------------|
| 제 출 자 | 고령군수 (가족행복과장) |
| 연 월 일 | 2024. . . |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제안이유

‘대가야읍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고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 동의 받기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 센터명 | 소재지 | 연면적 (정/현원) | 센터장 | 운영방법 | | 비고 |
|-----------------|----------------|-----------------|-----|------|------|----|
| | | | | 현재 | 운영계획 | |
|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 대가야읍 향교길 25 | 100㎡ (20/20) | 박혜주 | 직영 | 민간위탁 | |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무 전반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주요업무: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대상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필요 시 식사) 제공 등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

다. 민간위탁 예산

○ 예산액: 150,260천원

| 구분 | 예산(천원) | 내역 |
|-----|---------|---------------------------|
| 합계 | 150,260 | |
| 인건비 | 132,260 | · 인건비,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등 |
| 운영비 | 18,000 |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필요성

-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 민간에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연속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효율성 증대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 승인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5. 참고사항

가. 대가야읍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규 : 붙임 참조

「대가야읍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2. 목적 및 필요성

-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는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3. 민간위탁 대상

| 센터명 | 소재지 | 연면적 (정/현원) | 센터장 | 운영방법 | | 비고 |
|-----------------|----------------|-----------------|-----|------|------|----|
| | | | | 현재 | 운영계획 | |
|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 대가야읍 향교길 25 | 100㎡ (20/20) | 박혜주 | 직영 | 민간위탁 | |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사무 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5. 민간위탁 예산

- 예산액: 150,260천원 (2024년도 예산 기준)
- 지원 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비고 |
|-----|---------|--------|--------|--------|--------------------|
| 계 | 150,260 | 42,636 | 33,487 | 74,137 | |
| 인건비 | 132,260 | 36,636 | 28,687 | 66,937 | 4명 (상시근로2,시간제2) |
| 운영비 | 18,000 | 6,000 | 4,800 | 7,200 | |

※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민간위탁 기대효과

- 초등아동 돌봄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초등 돌봄 구축에 기여
- 전문적인 초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 수행
-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붙임)

관 련 법 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 (근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고령군 가족행복과 | |
| 연 락 처 | (054) 950 - 7061 |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24. . . (제 회) | |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 |
|-------|------------------|
| 제 출 자 | 고령군수 (가족행복과장) |
| 연 월 일 | 2024. . . |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제안이유

2024년 12월 31일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계약 대상시설

| 시설명 | 소재지 (면 적) | 위탁체 | 대표자 | 관 장 | 가입 회원 | 운영 요원 |
|--------------------|--------------------------------------|-------------------------------------|-----|-----|-----------|----------|
| | | 위탁기간 | | | | |
|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 다산면 다산로 681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 (198㎡) | 사)고령군종합 자원봉사센터 | 이강하 | 이강하 | 120 가구 | 2명 |
| | | 2022.06.01. ~ 2024.12.31.(2년7개월) | | | | |

나. 민간위탁 사무명 및 사무내용

- 사 무 명 :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 사무내용
 - 장난감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 영유아 장난감.도서 등의 구매.대여 및 관리
 - 회원제 운영 및 연회비 수납 관리
 -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 보고 및 기타 우리군과의 협의사항 등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근거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③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련조례

<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8조(위탁운영)①군수는 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③항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필요성

-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 직영시 인건비 등의 군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4. 재계약 민간위탁 결정

○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4. 10. 8.(화). 10:00
- 장 소 : 문화누리 교양교실
- 회의결과 : 사)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수탁 재계약 적격심의

5. 민간위탁 계약

- 군의회 동의 후 계약체결

6. 민간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7. 소요예산

| 구 분 | 금 액(천원) | 내 역 |
|-------|---------|-------------------|
| 합 계 | 120,000 | 도비24,000 군비96,000 |
| 인 건 비 | 72,914 | 직접 인건비 |
| 운 영 비 | 11,103 |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
| 사 업 비 | 35,983 | 프로그램운영, 장난감 구입 등 |

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설의 비전 및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
- 지역보육서비스 발전의 자체역량 강화 기여

- 효율성

- 지역 주민 및 영유아 시설과의 소통으로 효율성 증대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고령군 보육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에 의해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지도·감독 등) 및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지도·점검)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및 점검,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고령군 가족행복과 | |
| 연 락 처 | (054) 950-6208 |